

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안 번호	2617
----------	------

문성호 의원 (국민의힘, 서대문2)

-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이승복·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입니다.
- 120다산콜재단,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응답소 등은 1천만 시민 혹은 서울을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원을 상대하면서 신상의 위협이 되는 협박, 반말, 고성, 성적굴욕감이 느껴지는 폭언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악성 민원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, 실적에 민감한 민간 회사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은 더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.
-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에서 종사하고 있는 서울시 감정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금지 행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감정노동 발생시 선종료, 이용제한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